

농촌 현장의 소리 [9월]



※ 문의: 미래정책연구실 조사동행팀 송성환, 김미리(061-820-2325, 2159)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의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I리porter'가 보내온 농촌 현장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수립에 활용되길 바랍니다.<편집자 주>

□ 개요

- 수집기간: 2017. 9. 11. ~ 10. 10.(총 32건)
- 수집대상: KREI리porter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지역간담회

□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농업에 미친 영향과 이에 필요한 개선 방안

-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는 동감... 규제금액 상향 등 일부 보완해야
 - 청탁금지법 시행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시행을 유예하였으면 한다. 옛 우리 풍속에 '반기(명절음식 돌리기)' 라는 것이 있다. 떡 한 조각이라도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으로, 한가위나 설 같은 명절이면 마을 어른께도 빠짐없이 인사를 드림은 물론 집집마다 서로 반기하는 풍속은 우리 민족의 전통이다. 이런 농수산물을 뇌물로 보아선 안 된다. 농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도○○, 충남>
 - 주변 분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괜스레 김영란법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며 우스갯소리를 한다. 식당에는 3만원 미만의 '영란세트' 가 나오는가 하며 농산물의 소비도 많이 위축되었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좋았으나 아직은 몇몇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김○○, 전남>
 - 식사가 아닌 선물용 농산물을 3만 원에 맞춰 구성하려는 노력이 많다. 크게 비싸지 않은 농산물이라 하면 5만 원 이하에 충분히 구성이 가능할 것인데, 제대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타격 받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다.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내용의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의 대상에 농림축산식품은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산물은 예로부터 정을 나누는 것이지 사실상 금품이라 보기 어렵다. 농산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입산을 제외한 국내산 농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시켜 개정해 주기

바란다.<고○○, 제주>

- 청탁금지법이 농업부분에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 시행 전부터 여러 이견이 있었으나 시행해보고 나서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하지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법이 시행되고 나니 사과 매출이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70%가 추석과 설에 소비된다. 그런데 올해 추석의 경우, 시행 전과 비교하면 매출의 80%가 줄었다. 심지어 선물용 특품가격이 중품가격과 동일해지고 있다. 이런 피해가 사과만이 아닐 것이다. 농업분야에 대해 규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마땅하다.

<김○○, 경남>

- 농업경영비가 매년 상승해 2020년이면 현재보다 약 50%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이 정해놓은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다면 농가소득은 경영비에도 못 미치게 될 것이다. 농산물은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을 만들어 제외시켜야 마땅하다.<김○○, 경기>

- 교각살우(矯角殺牛)란 고사성어가 생각한다. 청탁금지법은 작은 것을 바로 잡으려다 큰 것을 잃었다고 본다. 법의 명분은 좋다. 뇌물 수수나 청탁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농수축산물까지 같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우리 농수축산물이 뇌물이란 잣대로 소비를 급감시켰다. 우선 국내 농수축산물의 규제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이○○, 전남>

- 5만 원이하라는 강제성 때문에 선물용 농산물을 소포장하는 추세다. 축산물은 소포장이라 해도 가격이 높아 판매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청렴한 나라를 만들어 모두가 잘 살자며 만든 법인데, 농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산업별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따르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더욱 면밀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이○○, 전남>

- 농산물을 소포장하고, 가격을 줄여나가니 제값에 판매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공직자 외에 일반국민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로 농산물 소비를 매우 위축하고 있다. 3만원, 5만원 규제금액 자체가 족쇄처럼 느껴진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상한 금액을 높여주기 바란다.<강○○, 제주>

- 청탁금지법은 필요 하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농업의 현실인데, 청탁금지법에 따라 농산물 판매에 적지 않은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농산물 가격 하한제 등 보상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오○○, 전북>

○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부작용으로 정을 나누는 문화, 선의의 보상 등 긍정적인 부분까지 파헤**

- 과일 농가는 추석이 가장 대목이다. 그런데 올해는 선물용 사과가 남아돌았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가 많다. 대기성이 없으면 선물은 관계없다며 뒤늦게 홍보하였으나 이미 사람들의 인식에 선물은 해서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는 것으로 각인되었는지, 명절에 선물 나누는 일이 사라졌다. 청탁금지법에 막혀 마음 표현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다.<김○○, 경북>
- 어느 때는 동사무소에 할머니가 도움을 받아 한사코 사양하던 공무원에게 담배 한 갑 준 것이 신고 되어 해당 공무원이 검찰에서 조사받고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농촌 지도직 공무원에 친밀한 표시로 점심식사 같이 먹자는 소리에도 기겁을 하며 도망가기 바쁘다. 이런 사례만 보아도 청탁금지법 시행이 더욱 각박한 사회를 만든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현○○, 제주>
- 추석을 앞두고 소포장을 늘리면서 포장비, 택배비 등의 비용이 올랐다. 또 올해는 고가의 명품 농산물은 생산하지 않았다.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해 소비자의 만족과 동시에 농가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번 추석에는 고가의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았다. 이 같은 변화가 장기화 된다면 중국산 저가 상품처럼 농산물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김○○, 제주>
-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우려하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다. 화훼산업, 특히 난 산업분야는 거의 폐업위기에 놓였다. 길게는 약 3년 이상 애지중지 키운 난을 원가보다 낮은 낙찰가를 받게 되었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금액을 올린다 해도 이제는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주변 눈을 의식해 시행 전과 같아질 수 없을 것이다. 화훼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은 화분을 선물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방송이나 SNS를 이용해 식물 키우기를 적극 홍보해주면 좋겠다.<허○○, 경기>

○ **청탁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 개발, 판매전략 등 새로운 대안 마련 시급**

-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꼭 필요하다. 100% 누구나 만족할 정책은 없다고 본다. 이 기회에 국민의식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부정청탁이나 뇌물, 접대의 대상이 내가 만든 농수산식품이 되는 것을 바라진 않을 것이다. 법을 탓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가 더 노력해 헤쳐나가야 한다.<김○○, 경북>
- 부정청탁과 뇌물수수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었다. 같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무자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청탁금지법은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할 법이다. 현세대가 과도기

를 겪고 나면 다음 세대에는 공정하고 더욱 안정된 농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차(茶)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더욱이 판매가 저조하다. 사장될 위기에 놓였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과 판매 전략을 짜며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정○○, 경남>

- 농업분야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법의 개정이 시급하지만 도입취지를 생각해보면 법에 따른 피해에 비해서 공익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그동안 농축수산물의 소비행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명절 때 선물수요에 의지하던 농산물을 평상시에 직접소비 형태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또 과대포장을 지양해서 공급가를 낮추고, 실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추는 상품을 개발해 나간다면 청탁금지법의 피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이○○, 충북>

-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선물세트의 가격과 구성이 간소화되었고 선물에 대한 수요가 낮아져 매출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법의 취지에 맞게 가족이나 친지를 제외한 사람에게 주던 선물비용이 줄어 전체적인 사회비용이 줄었다고 생각한다. 법이 정착이 되고 농가들도 상품개발 등의 노력을 한다면 지금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기대한다.<염○○, 경기>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과 식사 접대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농식품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대신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소비가 중요해짐에 따라 농식품 소비의 다각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과거의 일률적인 고급화 지향에서 상품, 서비스의 차별화와 맞춤형 공급 지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식품 소비 감소를 단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쿠폰 발행, 간소화된 선물 또는 실속형 식사 메뉴 개발 등이 필요하다.<정○○, 대전>

-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매우 좋다. 소위 3, 5, 10만 원이란 단가가 처음에는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추는 방법도 있었을 터인데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니 부작용이 많다. 하지만 성의와 감사의 표현을 뇌물로 변색시킨 우리 사회를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5만 원이하의 좋은 선물도 너무나 많다. 그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투명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화훼, 축산농가 등에는 피해가 많으나 그것을 빨리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임○○, 경기>